

( 불 입 )

## 「국채사무취급절차」 개정안

### 1. 주요 개정내용

#### 1 개정 필요성

- 「국채사무취급절차」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9.9.16일 시행) 제정 내용 및 법규제도실의 “규정 정비 추진 계획” (일반법규팀-69, 2019.5.10일, 법규제도실장 결재)을 반영할 필요

#### 2 주요 개정 내용

- 증권 등의 등록청구에 관한 근거법률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추가(제19조)
- 법규제도실의 “규정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수정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4조, 제46조, 제8장)
- <별지 제1호 서식> 인감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함

#### 3 시행일

- 시행일 : 2019. 9.16.